

[별지]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현황 >

(8월말 현재)

분 야 별	계 획	실 적
친절서비스교육	분기 1회	1회
친절서비스 자체강사 양성 교육	연 1회	1회
복사골아카데미	월 1회	7회
경기포럼	월 2회	16회
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	연 3회	3회

< 주택용 전력요금 적용기준 >

(단위 : 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요금(kWh당)	
100kWh 이하	390원	50kWh 까지	34.50원
		51 ~ 100kWh	81.70원
101 ~ 200kWh	850원	101 ~ 200kWh	122.90원
201 ~ 300kWh	1,500원	201 ~ 300kWh	177.70원
301 ~ 400kWh	3,590원	301 ~ 400kWh	308.00원
401 ~ 500kWh	6,750원	401 ~ 500kWh	405.70원
300kWh 초과	11,980원	500kWh 초과	639.40원

< 벤처창업보육센터 타 시·군 운영사례 >

구 분	경기벤처창업 보 육 센 터	강동구창업 보 육 센 터	군포벤처창업 보 육 센 터	안양 만안벤처센터
소재지	수원 팔달 이의동 산 111-8	서울 강동 성내동 552 청해빌딩 3~5층	군포시 당정동 358 (구 동청사 활용)	안양 만안 안양동 517-18

규 모	24업체 (경기중기센터 5~7층)	325평 20업체	115평 6업체	456평 6업체
운영주체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강동구청	군포시 (한세대학 위탁운영)	안양시
보육기간 (계약기간)	2년(1회 한하여 1년 이내 연장가능)	2년(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가능)	1~2년(1, 2개월 연장가능)	2년 (연장가능)
입주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보증금 10만원/평 • 보육보증금 200만원 • 관리비 1만원/평, 월 • 공과금 실비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100만원 • 관리비 6,000원/평, 월 • 임대료 9천~1만원/평, 월 • 공과금 개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재산평가액의 10/1000 • 공과금 실비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3,270원/평, 월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업체부담
지원사항	인터넷전용선, 각종 편의시설, 보조금지원, 투자알선 등	인터넷전용선, 개발 장비 등	인터넷전용선, 공동 사무용기기	인터넷전용선, 각종 편의시설, 각종 자금 우선지원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업체는 발전 기부금 납부의무 (발행주식 1%) • 보육기간 연장시 부담금 50% 인상 	주식상장시 지원 혜택금의 1/10 해당금액 주식 기부	-	창업보육센터 개념이 아니며 벤처집적 시설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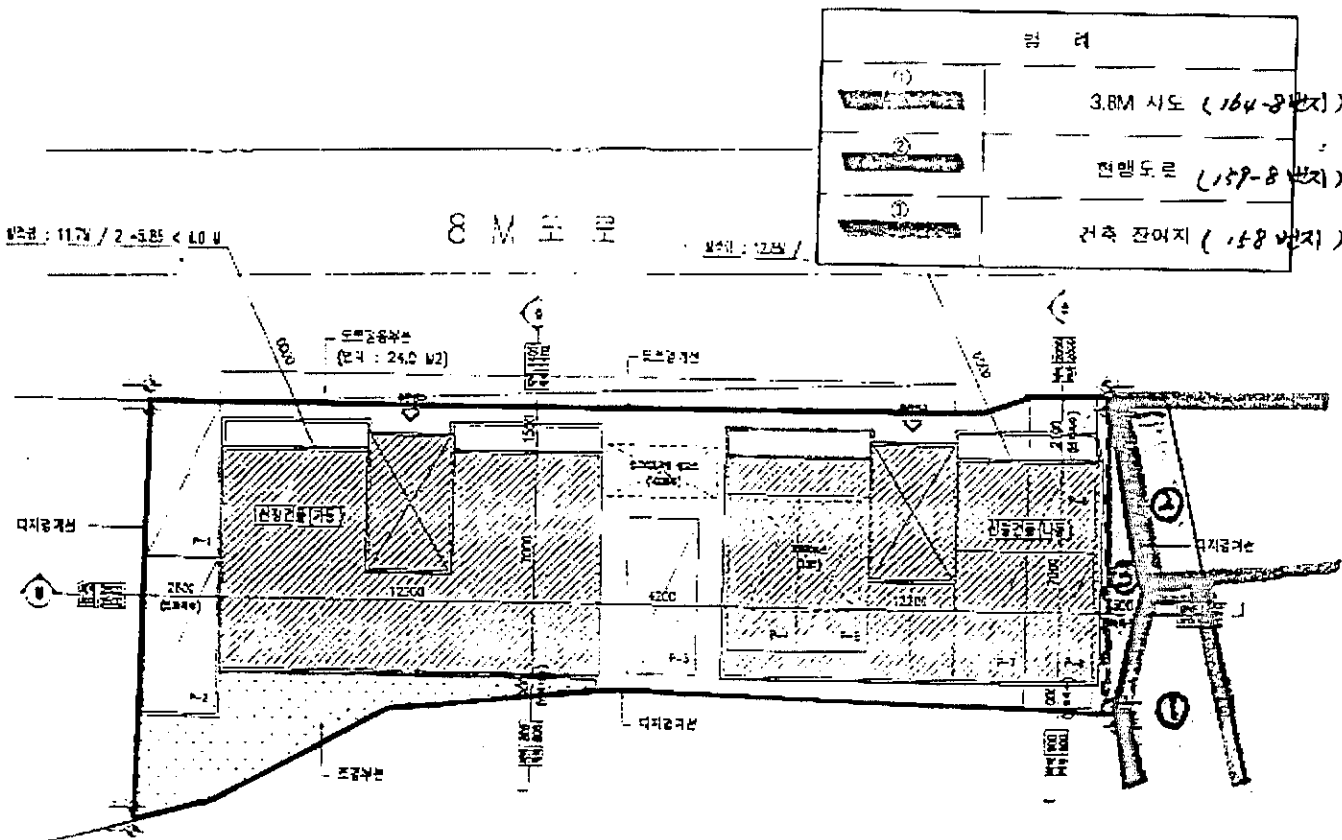
<노동복지회관 잉여금 비교표>

구 분	노 총 주 장	시 의 입 장	고문변호사 의견
잉여금 성격	○위탁기간 종료, 해지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장학 기금으로 별도 예치	○위의 잉여금은 수익금이 아니고 집행하여야 할 특별회계 미집행 예산임	○특별회계 미집행 수입금으로 부천시에 귀속되어야 함이 마땅함
잉여금 처 분	○위탁기간 종료 후 위탁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업수익금의 운용 및 처분권리는 수탁체에 있음	○노동복지회관은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이므로 수익금은 불인정하며 또한 잉여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승인없이 타 용도 사용불가 명시 (협약서 제10조)	

< 조오런스포츠센터의 보상요구에 대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답변내용 >

1. 건물을 임차한 자는 그 물건의 유지보존에 꼭 필요한 투입비와 유지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높이는 데 쓴 비용 즉, 유익비를 투입하게 되는 경우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건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유익비와 투입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
2. 그러나 민법 제104조에서는 당사자의 강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임차인의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유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 (1) 민법 제623조 규정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2) 사회관행상 임대차 관계에 있는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 부담으로 보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1억 5000만원 상당의 투입비를 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은 민법 제623조 규정인 임대인의 의무규정과 사회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라 볼 수 있고
 - (3) 목적물의 임대차계약 당시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투입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차후에 상용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관련자의 언절도 있고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므로 임대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고 투입비를 보상해 준다는 내용을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인 바
 - (4) 이에 임차인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기한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임

< 두산아파트 정문 앞 다세대 주택 현황도 >



보충시정질문(서면)

서강진 의원

질 문

○ 동별 현재 인원을 밝혀주시고 19명의 결원이 어느 동에 몇 명씩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류중혁 의원

질 문

1. 중앙공원 외곽보도 중 각 코너에 타일로 시공되어 우천시 중앙공원을 찾아 달리기 및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데 대하여 타일을 철거할 것에 대해 답변바람